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문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과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,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,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·복지·고용·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「소득세법」 제21조 및 제84조, 제127조,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'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', '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'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,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총 지급금

액에서 필요경비(총지급액의 60%)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2%(소득세 및 지방소득세)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과는 2022년 △△△△ 3기 컨설팅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 2명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